2023.1.6.

국회예산정책처 I 나보포커스 I 제56호

NABO FOCUS

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

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최천규 분석관

2022년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

▪ **제401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22.12.23.)와 제4차 본회의(12.28.)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 의결**

- 12.23.: 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 의결
- 12.28.: 「농어촌특별세법」 등 세법개정안 2건 의결

▪ **심의 경과**

- 제400회 정기회 기간 동안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·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11월 30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로 지정된 25건(세법안 19건)이 12월 1일 본회의 자동 부의
- 이후 정기회 및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쟁점에 대한 여·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던 중 국회의장의 두 차례에 걸친 중재(12.8., 12.15.)와 여·야 협의를 통해 12월 22일 여·야 합의안 도출

[표 1] 2022년 세법개정안 심의 경과

<주요 심의 경과>

일 자	구 분
▸9.1.	정부세법개정안 제출 (9.30. 추가제출 1건)
▸11.18.	세법개정안 상정(334건)
▸11.22.	조세소위심사 시작
▸11.30.	세입 부수법률안 지정
▸12.1.	세입 부수법률안 자동부의
▸12.1. ~12.22.	쟁점 법안 여·야 협의
	국회의장 중재안 제안 (1차: 12.8., 2차: 12.15.)
▸12.22.	여·야 합의
▸12.23., 12.28.	본회의 심의· 의결

<주요 쟁점 법안 합의 결과>

구 분	정부·여당안	야당 입장	합의 결과(의결)
법인세	- 최고세율 3%p 인하	- 수용 불가	-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%p 인하
금융투자 소득세 등	- 금투세 과세 2년 유예 -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100억원	- 정부안 수용 - 수용 불가	- 금투세 과세 2년 유예 - 대주주 요건: 10억원
종합 부동산세	(기본공제금액) - 일반 9억원 - 1주택자 12억원 (세율) 0.5~2.7% - 다주택자 중과 폐지	(기본공제금액) - 기본공제 인상 일부 수용 (세율) - 다주택자 중과 폐지 이견	(기본공제금액) - 일반 9억원 - 1주택자 12억원 (세율) - 2주택 이하: 0.5~2.7% - 3주택 이상: 0.5~5.0%
가업상속 공제	(적용대상) - 매출1조원 미만 중견기업 (공제한도) - 400~1,000억원	- 수용 불가	(적용대상) - 매출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(공제한도) - 300~600억원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개정세법 주요내용

▪ [법인세]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하

-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%p 인하

[표 2]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하 개정 내용

구 분	현 행		개 정	
	과세표준	세율	과세표준	세율
법인세율	2억원 이하	10%	2억원 이하	9%
	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20%	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9%
	200억원 초과 3,000억원 이하	22%	200억원 초과 3,000억원 이하	21%
	3,000억원 초과	25%	3,000억원 초과	24%

▪ [소득세] 과세표준 구간조정

-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: 1,200만원 → 1,400만원, 4,600만원 → 5,000만원

[표 3]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개정 내용

구 분	현 행		개 정	
	과세표준	세율	과세표준	세율
소득세 과세표준 구간	1,200만원 이하	6%	1,400만원 이하	6%
	1,200~4,600만원	15%	1,400~5,000만원	15%
	4,600~8,800만원	24%	5,000~8,800만원	24%
	8,800~1.5억원	35%	8,800~1.5억원	35%
	1.5~3억원	38%	1.5~3억원	38%
	3~5억원	40%	3~5억원	40%
	5~10억원	42%	5~10억원	42%
	10억원 초과	45%	10억원 초과	45%

▪ [소득세]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

-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: 2023.1.1. → 2025.1.1.

[표 4]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개정 내용

구 분	현 행	개 정
금융투자소득세 시행	- 시행일: 2023년 1월 1일	- 시행일: 2025년 1월 1일

▪ [소득세] 월세 세액공제 확대

-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: 10% → 15%(총급여액 5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 12% → 17%)

[표 5] 월세 세액공제 확대 개정 내용

구 분	현 행	개 정
세액공제율	- 월세액의 10% (총급여액 5,500만원/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 12%)	- 월세액의 15% (총급여액 5,500만원/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 17%)

▪ [종합부동산세] 주택분 기본공제액 및 과세표준, 세율 조정

- 주택분 기본공제액 상향: 6억원 → 9억원(1주택자 11억원 → 12억원)
- 세율인하: (개인) 2주택 이하 0.6%~3.0% → 0.5%~2.7%, 3주택 이상 1.2%~6.0% → 0.5%~5.0%
  (법인) 2주택 이하 3.0% → 2.7%, 3주택 이상 6.0% → 5.0%

[표 6]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및 과표구간, 세율 조정 개정 내용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현 행</th><th>개 정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기본공제액</td><td>- (일반) 6억원
- (1세대 1주택자) 11억원</td><td>- (일반) 9억원
- (1세대 1주택자) 12억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개인</td><td>2주택자 이하</td><td>
<table>
<tr><th>과세표준</th><th>세율</th></tr>
<tr><td>3억원 이하</td><td>0.6%</td></tr>
<tr><td>6억원 이하</td><td>0.8%</td></tr>
<tr><td>12억원 이하</td><td>1.2%</td></tr>
<tr><td>50억원 이하</td><td>1.6%</td></tr>
<tr><td>94억원 이하</td><td>2.2%</td></tr>
<tr><td>94억원 초과</td><td>3.0%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h>과세표준</th><th>세율</th></tr>
<tr><td>3억원 이하</td><td>0.5%</td></tr>
<tr><td>6억원 이하</td><td>0.7%</td></tr>
<tr><td>12억원 이하</td><td>1.0%</td></tr>
<tr><td>25억원 이하</td><td>1.3%</td></tr>
<tr><td>50억원 이하</td><td>1.5%</td></tr>
<tr><td>94억원 이하</td><td>2.0%</td></tr>
<tr><td>94억원 초과</td><td>2.7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3주택자 이상</td><td>
<table>
<tr><th>과세표준</th><th>세율</th></tr>
<tr><td>3억원 이하</td><td>1.2%</td></tr>
<tr><td>6억원 이하</td><td>1.6%</td></tr>
<tr><td>12억원 이하</td><td>2.2%</td></tr>
<tr><td>50억원 이하</td><td>3.6%</td></tr>
<tr><td>94억원 이하</td><td>5.0%</td></tr>
<tr><td>94억원 초과</td><td>6.0%</td></tr>
</table>
*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포함
</td><td>
<table>
<tr><th>과세표준</th><th>세율</th></tr>
<tr><td>3억원 이하</td><td>0.5%</td></tr>
<tr><td>6억원 이하</td><td>0.7%</td></tr>
<tr><td>12억원 이하</td><td>1.0%</td></tr>
<tr><td>25억원 이하</td><td>2.0%</td></tr>
<tr><td>50억원 이하</td><td>3.0%</td></tr>
<tr><td>94억원 이하</td><td>4.0%</td></tr>
<tr><td>94억원 초과</td><td>5.0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법인</td><td>- 2주택 이하: 3.0%
- 3주택 이상: 6.0%</td><td>- 2주택 이하: 2.7%
- 3주택 이상: 5.0%</td></tr>
</table>

▪ [상속세] 가업상속공제 확대

- 적용대상 확대: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 미만 → 5천억원 미만
- 공제한도액 상향: 최대 500억원 → 600억원
- 사후관리 기간 완화: 7년 → 5년

[표 7] 가업상속공제 확대 개정 내용

구 분	현 행	개 정
적용대상	-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 미만	-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
공제한도	- 가업영위기간별 10~20년: 200억원 20~30년: 300억원 30년 이상: 500억원	- 가업영위기간별 10~20년: 300억원 20~30년: 400억원 30년 이상: 600억원
사후관리 기간	- 7년	- 5년

개정세법 세수효과

▪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

-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3~2027년 동안 64.4조원(연평균 12.9조원)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
  - 주요 세목별 세수효과(5년 누적): 소득세 –19.4조원, 법인세 –27.4조원, 증권거래세 –10.9조원 종합부동산세 –5.7조원, 기타 세목 –0.9조원
- 국회 수정사항으로 인한 세수 변동규모는 정부 세법개정안 대비 5년 누적 6.2조원 증가

[그림 1] 개정세법의 세수효과: 2023~2027년 누적

(단위: 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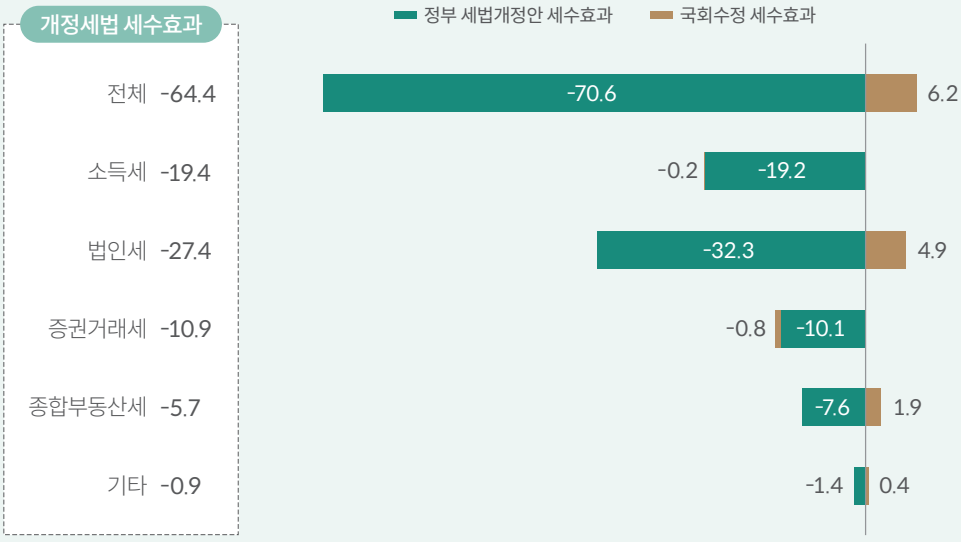

주: 세수효과는 개정세법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추계한 결과임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☞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「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」 참조

발간등록번호 | 31-9700484-001731-14 ISSN | 2672-0280
발행처 |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인 |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담당 |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문의 | 02-6788-4838
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